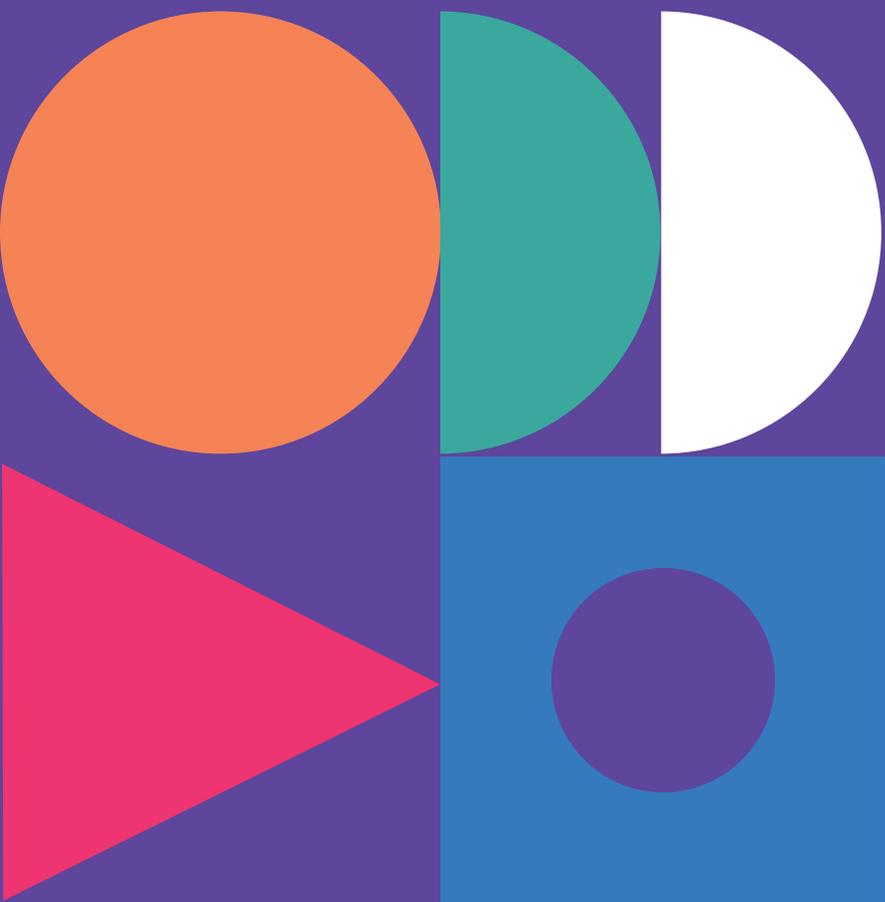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20
23

전남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시공모안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재)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을 시행 하오니,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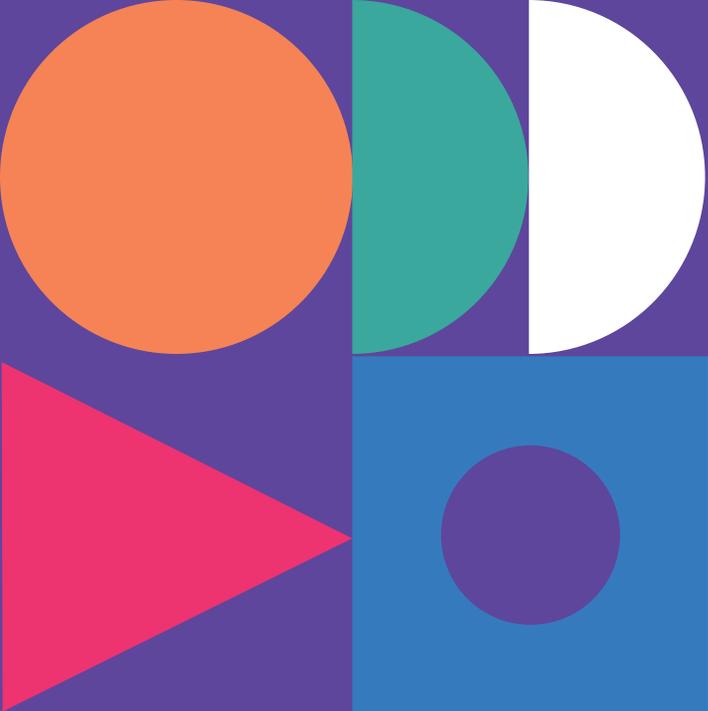
[필독 :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안내]

저희 재단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시공모와 관련된 부정청탁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의하여 청탁인과 해당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과태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지원금 전액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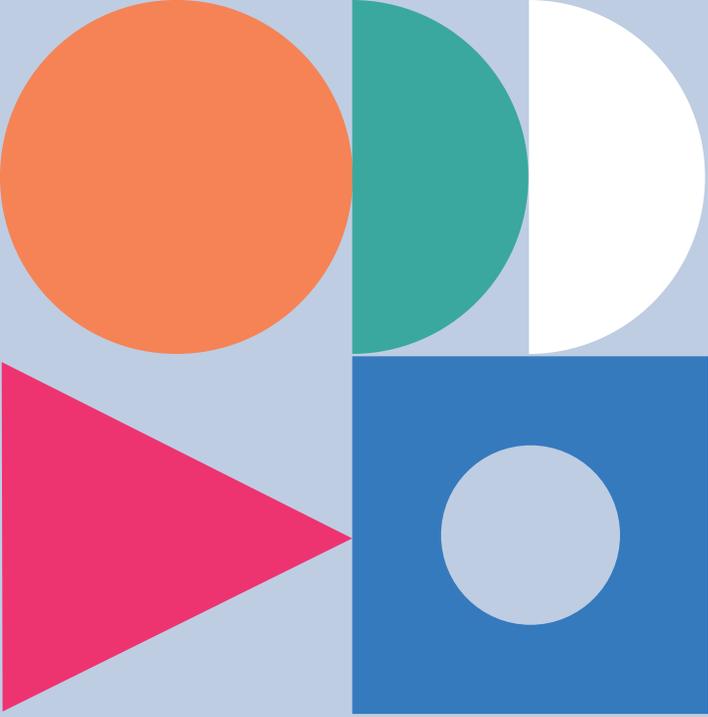
2022년 12월 12일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CONTENTS

1. 2023 전남문화재단지원사업 공모 한눈에 보기	8
2. 2023 지원사업 주요 개편사항	11
3. 사업 개요	13
I. 지원사업 구성	13
II.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4
III. 공통안내 사항	15
IV. 사업별 공고문	21
① 지역문화예술육성(시각/공연/문학예술)	19
② 공연작품제작	23
③ 창작공간활용	25
④ 청년예술가 활동(1년차/2년차)	27
⑤ 자율기획형 공모사업	29
⑥ 공연장상주단체육성	31
4. 참고. 보조금 예산편성 항목	36
5. 문의처	38



들어가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은 사람을 초대하고 모셔서 예술가의 감성을 공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활동 자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올해는 2년간의 어려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결실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력과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열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바탕으로 2023년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참여단체의 역량강화와 집중사업 진입 유도를 위해 기존 5백만원이던 지원금을 7백만원으로 상향하였고, 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창작활동 발굴과 지원영역 확장을 위해 주제와 형식, 시기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지율기획형(모두의 예술) 공모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도 지방이양에 따른 재량권이 확보된 만큼 그동안 전남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신규단체 진입과 단계별 육성을 위한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 사업을 신규로 진행합니다.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예술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 사이, 공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전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예술가 곁에서 그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문화예술 파이팅!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SNS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

www.jncf.or.kr

전남문화재단 유튜브 전남문화TV

www.youtube.com/@jncf5800

전남문화재단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jncf5800

전남문화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jncf.or.kr

전남문화재단 블로그

www.blog.naver.com/jncf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한눈에 보기

1 지원사업 정시공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명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육성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3백만원 ● 단체 7백만원
			공연예술	
			문학예술	
		집중	공연작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최대 60백만원 ● 2년차: 1년차의 80% 이내
	창작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 60백만원 ● 비거주형 30백만원 	
	청년예술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10백만원 ● 2년차 15백만원 	
	공연장상주 단체육성	기획	자율기획형(모두의 예술) ※ 신규	● 최대 40백만원
			육성	예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신규
	집중	공연장상주단체 집중지원		● 최대 90백만원
지원대상	전남 거주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공고기간	'22. 12. 12.(월) ~ 2. 3.(금) 18:00			
신청접수	'23. 1. 25.(수) ~ 2. 3.(금) 18:00, 10일간			
심의기간	'23. 2. 13.(월) ~ 2. 24.(금), 12일간			
결과발표	'23. 2. 28.(화)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지원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2~3일 전에 신청바랍니다.

※ 담당자 근무시간은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는 12월~'23년 1월 중 권역별로 3차례 진행되며, 요청에(15인 이상)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2

지원신청 분야, 지원자격

알아두기

첫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모든 공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예산교부 및 정산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No	구분	사업명	지원신청분야					지원자격		휴식년제		
			전통	시각	공연	문학	연구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육성 사업	시각예술	●	●			●	●	●	격 년 제	3 년 연 속
			공연예술	●		●		●	●	●		
			문학예술				●	●	●	●		
2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집중 사업	공연작품제작			●				●	-	4 년 연 속
창작공간활용				●	●	●			●			
청년예술가활동			●	●	●	●	●	●				
4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기획 사업	자율기획형 (모두의 예술)	●	●	●	●	●		●	-	4 년 연 속
5			예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6	공연장상주 단체 육성	집중	공연장상주 단체 집중지원			●				●	-	4 년 연 속

3

사업운영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주요추진일정

추진시기	과정	내용
'22. 12. ~ '23. 2.	사업공모 접수	● 6개 사업공모 건에 대한 접수
'22. 12.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을 저조지역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 별도 접수를 받아 추진
'23. 2. ~	사업심의	● 서류, 현장, 인터뷰 심의 등 심의추진
'23. 2월 말	결과발표	● 누리집,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등을 통해 발표(심의위원, 심의평 공개)
'23. 3. ~	선정단체 워크숍 및 컨설팅	●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사업계획 보완 및 방향 제시)
'23. 3. ~ 10.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3천만원 이상 2차 분할 지급)
'23. 6. ~ 12.	전문가 현장평가	●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추진
'23. 5. ~ 12.	사업모니터링	● 사업별 모니터링
'23. 8. ~	중간 성과공유 워크숍	● 중간성과 공유, 하반기 사업수행 컨설팅 등
'23. 10.	사업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2024년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
'23. 10.	사업개선을 위한 공청회	● 사업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개인·단체 의견 수렴
'23. 11. ~ 12.	성과공유 워크숍	● 2023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23. 12. ~	'24년 지원사업 설계 확정	● 2024년 지원사업 공모(안) 마련 및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주요 개편사항

1 사업적 측면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 육성사업

- 단체지원액 상향 : (기존) 5백만원 → (변경) 7백만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 집중사업

- 공연작품제작사업 (개선)

· 2년차 지원규모 현실에 맞게 조정 : (기존) 1년차의 50% 이내 → (변경) 1년차의 80% 이내

· 참여인력 조정 : (기존) 도내 거주 예술인 70% → (변경) 도내 거주 예술인 5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 기획사업

- (사회적가치지향 프로젝트) 재단 기금사업으로 이관 ※ 별도 공모 추진

- 자율기획형 공모사업 (신설)

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영역 확장을 위한 '자율기획형' 공모사업 신설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 신규단체 진입·인큐베이팅을 위한 육성사업 신설 및 단계별 과업 조정

· (기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창작 1, 레퍼토리 2, 퍼블릭 1

· (변경) 육성/집중유형 운영

(육성)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창작 1, 퍼블릭 1 (4천만원 이내)

(집중)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창작 1, 레퍼토리 1, 퍼블릭 1(9천만원 이내)

- 공연장 상주 제한 조정

· (기존) 1개 공연장당 1개 단체 제한 → (변경) 1개 공연장당 2개(집중1 육성1) 단체까지 상주 가능 ※ 같은 유형끼리 동일공연장 상주 불가

2

주요 개편사항 한 눈에 보기

단위 사업	세부사업	변경 사항	세부사업	개선사항
	2022년		2023년	
육성 사업	① 시각예술	▶유지	①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지원액 상향 (기존) 5백만원 → (변경) 7백만원
	② 공연예술	▶유지	② 공연예술	
	③ 문학예술	▶유지	③ 문학예술	
집중 사업	공연작품제작	▶유지	공연작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차 지원규모 현실에 맞게 조정 (기존) 1년차의 50% 이내 (변경) 1년차의 80% 이내 • 참여인력 구성 비율 조정 (기존) 도내 거주 예술인 70% (변경) 도내거주 예술인 50%
	창작공간활용	▶유지	창작공간활용	-
	청년예술가활동	▶유지	청년예술가활동	-
기획 사업	-	▶신설	자율기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영역 확장을 위한 사업 신설
	사회적 가치지향 프 로젝트	▶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기금사업으로 사업 이관 ※ 별도 공모 예정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개선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단체 진입 및 육성을 위한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신설 • 1개 공연장당 2개 (집중1 육성1) 단체 상주 가능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개요

I

지원사업 구성

No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한도
1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육성	시각예술 ● 시각예술 창작, 전시, 연구 활동 (미술, 만화, 영화, 건축, 사진, 공예, 서예, 영상, 조각, 설치 등)	개인 3백만 원 단체 7백만 원
		공연예술 ● 공연예술 창작, 공연, 연구 활동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연예, 뮤지컬, 오페라, 전통공연 등)		
		문학예술 ● 문학 활동을 통한 집필 및 창작 발간		
2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집중	공연 작품제작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작 및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 제작과정 지원	● 작품제작(1년차) : 60 백만 원 이내
3		창작공간 활용 ● 지역 예술인과 국내외 예술인들의 창작·교류 활동 지원 ● 창작 공간을 활용한 결과발표회, 역량강화교육, 주민 연계활동, 아카이브활동	● 거주형 : 60백만 원 이내 ● 비거주형 : 30백만 원 이내	
4		청년 예술가 활동 ● 청년 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 창작준비(1년차): 창작준비 및 역량강화 - 창작발표(2년차): 창작활동·발표 및 역량강화	● 창작준비(1년차) : 10백만 원 이내 ● 창작발표(2단계) : 15백만 원 이내	
5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기획	자율 기획형 공모사업 ● 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영역 확장을 위한 '자율기획형' 사업	40백만 원 이내
6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육성	예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연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장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예비단체: 창작(1), 퍼블릭(1) ※ 기존단체: 창작(1), 레퍼토리(1), 퍼블릭(1)	4천만 원 ~ 9천만 원 이내 (공연장 예산매칭 평 가반영)
		집중		

II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 사업적 측면

구분		일정
공모	공고	2022. 12. 12.(월) ~ 2023. 2. 3.(금) / 54일간
	설명회 · NCAS 교육	공고 기간 중 실시 '22.12.~'23.1.월 중 권역별 3차례 진행되며 요청시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접수	'23. 1. 25.(수) ~ 2. 3.(금) 18:00/10일간
	심의	'23. 2. 13.(월) ~ 2. 24.(금)/ 12일간
	결과 발표	'23. 2. 28.(화) ※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공지

※ 해당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2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 | | | |
|------------|-----------------------|--------------|
| ① 시스템 접속 | ② 회원가입*(단체, 개인 구분 필수) | ③ 지원신청 사업 선택 |
| ④ 지원신청서 작성 | ⑤ 최종제출하기 클릭 | ⑥ 지원신청내역 확인 |

* 회원가입방법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개인 및 단체 구분) → 주민등록번호 및 단체 고유번호 입력 실명(단체)확인 → 기본정보 입력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고

※ 지원신청서 작성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회원정보(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소, 단체소개, 경력 등)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사업관련 문의처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2~5825, 5828, 5829

○ NCAS 관련 문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콜센터 1577-8751

공통 안내사항

1 지원신청 공통조건 안내

1.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2021.12.12.이전) 이상 거주 주소를 전남도에 두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거주주소 확인 예정)
- ※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필수
- 개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우대사항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재단 문화예술 인력사업 수료자가 기획, 추진하는 사업
- 2022년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
- 장애예술인 우대(단체의 경우 대표가 장애예술인 경우만 인정) * 장애인증 첨부

15

2. 지원신청 부적격자

단체·개인 공통 지원제한·불가 사항

- 최근 3년('20~'22)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지원·선정 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 ※ 단,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와 재단이 정하는 기간 중 사업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3년('20~'22) 지원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23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재단에서 보완요청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3년('20~'22) 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2023년도 지원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경우

개인 지원제한·불가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체 지원제한·불가 사항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단체 등과 이들 기관 소속 또는 운영 단체

3. 사업별 휴식년제 적용대상

● 육성사업(시각, 공연, 문학분야)

- 2022년도에 지원을 받은 개인 : 2023년 휴식년
- 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 3년('20~'22)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 2023년 휴식년

● 창작공간활용, 공연작품제작

-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4년('19~'22)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 2023년 휴식년

● 청년예술가활동

- 연속지원(1년차-2년차 지원)을 받기 때문에 휴식년제 적용 없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4년('19~'22)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 2023년은 휴식년

4.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건립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적립, 용자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당해 연도 공모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은 사업

5.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6. 다중지원 총량 제한

- 1개 단체(개인)에 대하여, 2023년 전남문화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공모에 최대 2건까지 선정·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통합하여 80백만원 이내로 제한함
- ※ 따라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집중) 선정단체는 해당 1개 사업만 수행 할 가능성이 큼

7.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

- 전남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 신청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신청자격과 활동경력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정확한 정보와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여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 및 제도 준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2021.8.31.)
2023년 지원사업 신청자 및 단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준수를 위해 청렴이행서약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등 제도 이행 : 지원사업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예술인 및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책정과 신고·납부는 필수입니다.

17

9.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자율결정) •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 •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신청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됨
지원금 사용 및 예산 편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확정 이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산출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대비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운영비 및 자산취득등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2개월전에 교부신청 및 변경 신청 필수
사업 수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단체 및 개인은 재단이 추진하는 컨설팅, 평가 및 워크숍 참석 필수 • 선정단체 및 개인은 저작권법 및 회계교육 참석 필수 • 사업 시작 2개월 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신청(사업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 마감은 10월 31일이며, 그 이후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사업비 카드 개설 • 사업 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불가 • 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 사업임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 전라남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 일부 사업은 현장 평가를 진행,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 시 심의자료로 활용 • 사업 홍보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 최종 사업집행은 사업 회계연도 마감일(2023. 12. 31.)을 반드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정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단체는 집행정산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보고를 사업수행 종료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차기 년도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 정산 증빙자료는 추후 선정단체 워크숍을 통해 세부 안내 및 교육 추진 (예정) • 지원 확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였을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3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p>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공고내용 확인 (신청자격, 지원내용, 필수제출 자료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접속 ※ 개인 신청 시, 단체 사업으로 신청 불가(개인예술 활동으로 신청)
<p>회원정보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수정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소, 소개 및 경력 등) ※ 추후 정보 미수정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과 단체 책임
<p>지원신청서 작성</p>	<p>지원신청 > 지원관리에서 지원가능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p> <p>[신청개요] ※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명 : 행사명, 프로그램명, 책자제목 등으로 작성 <p>[사업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 해당 사업을 지원한 계기, 사업목표, 추진방향 등 작성 ▶ 세부사업내용 : 필수 기재사항(개요, 세부계획)을 포함 작성 <p>[수입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문화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 : 보조금 신청액 작성 ▶ 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 : 자부담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 기타 :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특히 공공재원의 경우 확정 예정일 경우만 작성) <p>[지출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 ※ 예) 출연자 A급 500,000원 X 3명 ▶ 지출총금액(원) :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총 금액 지원신청액(원) : 전남문화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사업성과(예측)]

- ▶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사업이 지역 또는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업이 본인 또는 단체에 미치는 영향
- ▶ 계량적인 결과예측 : 해당되는 부분에 성과를 계량화(숫자)하여 작성

저장 및 최종제출

[저장] - [미리보기]

내용 확인 후, 지원마감 전 [최종제출]

※ [최종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 [제출취소] 후 수정 가능

육성사업내용 기재사항(예시)

공연	시각	문학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공연명) - 일시/횟수/소요시간 - 장소 - 사업대상 <p>■ 행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프로그램 (주제, 줄거리, 곡명 등) <p>■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총 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역할 : 000(이름) <p>■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월 0일 ~ 0월 0일 : 추진내용 <p>■ 홍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계획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명 - 전시기간 - 전시장소 - 사업대상 <p>■ 전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주제 - 전시작품 종류 및 작품 수 - 전시구성 및 연출방안 <p>■ 참여작가 (총 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기획자 및 참여작가 명단 <p>■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월 0일 ~ 0월 0일 : 추진내용 <p>■ 홍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계획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제목 - 발간시기 - 작품규모(작품 수, 페이지) - 사업대상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목차, 줄거리 <p>■ 참여작가 (총 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필진 이름 및 수록 작품 수 <p>■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월 0일 ~ 0월 0일 : 추진내용 <p>■ 홍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계획 <p>■ 배포 등 활용 계획</p>

IV

사업별 공고문

지역문화예술육성

육성사업은 시각, 공연,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전문예술인들이 창작, 전시, 공연, 발간, 연구 활동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전남 도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영역	◆ 도내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문화예술 활동							
	분야	사업내용						
	시각분야	▶ 시각예술(미술, 만화, 영화, 건축, 사진 등) 창작, 전시, 연구활동						
	공연분야	▶ 공연분야(연극, 무용, 음악, 국악, 연예 등) 창작, 공연, 연구활동						
	문학분야	▶ 문학분야(집필, 문학행사, 발간 등) 창작, 발간, 연구 활동 ※ 2023년도 발간 예정인 원고 제출 (기존 출간된 작품 재발간 불가 / 시·시조 3편, 소설·수필·평론 1편)						
지원항목 (예시)	◆ 문화예술 행사, 창작활동, 책자 발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홍보비, 인쇄출판비 등							
지원한도	◆ 개인 3백만원, 단체 7백만원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23.1.25.~2.3. (18:00)	>	지원심의	>	선정발표	>	선정단체 워크숍	>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정산보고	>	만족도 조사	

심의기준	1차 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 심의위원회 (서류심의)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우대사항	◆ 장애인, 다문화,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개인 ※ 증빙서류 제출 필수	
필수제출 자료	단체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중 1개	
	-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1개 ※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개인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이전) 전라남도 내 거주 확인) ※ 공고일 이후 발행 본만 인정	
	- 개인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1개 ※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예술활동증명서' 제출 시 실적자료 제출 불필요	
- 문학: 2023년도 발간 예정인 원고 제출(시·시조 3편 / 소설·수필·평론·희곡 1편) ※ 기존 출간된 작품 재발간 불가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육성사업 신청 단체 및 개인은 선정단체 워크숍 참석 필수(연1회)	

IV

공연작품제작

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지역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공연예술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1년차(작품제작) : 공연작품 구성을 위한 제작비용 지원 및 공연 추진
- ☞ 2년차(공연지원) : 1년차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작품 재공연 추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소재 거주 및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 개인 신청 불가 ※ 중앙 및 지회, 연구회, 연맹, 협의회 등 협회 성격의 단체는 배제하며, 단체 설립 목적이 공연 활동인 단체에 한함 				
지원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무용, 음악, 한국음악(국악), 뮤지컬, 오페라,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초연작품 또는 원작을 각색한 공연 ※ 도내 거주 예술인 50% 이상 참여 필수 ※ 2년 연속지원 여부 결정 : 1년차(22년)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심의를 통해 2년차(23년)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8e6c9;"> <th style="text-align: center;">필수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공연작품 구성을 위한 제작 및 3회 공연(1년차) - 시놉시스, 대본 구성 등 작품 제작비용 지원 - 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공연 - 도외에서 공연을 추진할 경우 1회 인정 -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시 공연 횟수 인정 </td>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출연진, 스태프 등 공연 관계자 중, 중·고·대학생 (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의 및 공연 전·후,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재단 제출 필수 </td> </tr> </tbody> </table>	필수사항	비고	공연작품 구성을 위한 제작 및 3회 공연(1년차) - 시놉시스, 대본 구성 등 작품 제작비용 지원 - 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공연 - 도외에서 공연을 추진할 경우 1회 인정 -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시 공연 횟수 인정	출연진, 스태프 등 공연 관계자 중, 중·고·대학생 (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의 및 공연 전·후,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재단 제출 필수
필수사항	비고				
공연작품 구성을 위한 제작 및 3회 공연(1년차) - 시놉시스, 대본 구성 등 작품 제작비용 지원 - 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공연 - 도외에서 공연을 추진할 경우 1회 인정 -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시 공연 횟수 인정	출연진, 스태프 등 공연 관계자 중, 중·고·대학생 (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의 및 공연 전·후,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재단 제출 필수				
지원항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사례비, 출연료, 연출료, 작품료, 홍보비, 대관료, 장비 임차비, 무대 및 의상제작비 등 ※ 대표자 사례비는 전체 사업비 중 10% 이내로 편성 가능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최대 60백만 원 이내 ◆ (2년차) 1년차 지원금의 8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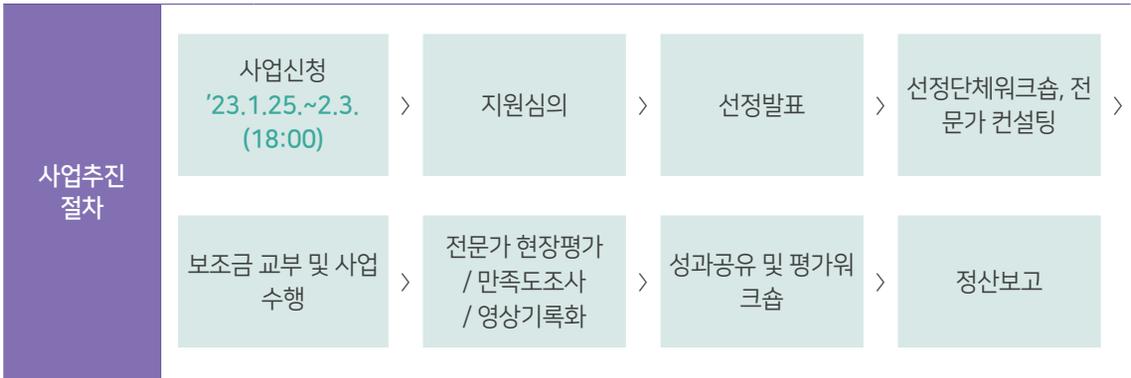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23.1.25.~2.3. (18:00) > 지원심의 > 선정발표 > 선정단체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전문가 현장평가 / 만족도조사 / 영상기록화 > 성과공유 및 평가워 크숍 > 정산보고			
심의기준	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서류)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3차(인터뷰) 심의위원회	1년 차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2년 차	1년차 사업 수행 결과 평가	
필수제출 자료	단체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중 1개			
	-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작품 활용계획서 1부 ※ 제작방식과 2년 차 사업 진행을 위한 작품 활용계획 기술			
	- 공연 작품 대본 또는 악보 등 ※ 작품이 미완성 경우 장면 연출 계획, 시놉시스 등 세부 기술			
- 참여인력 명단 및 프로필				
연속지원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년 차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단체 ◆ 지원내용 : 1년차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작품 재공연 ◆ 사업장소 : 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 도외에서 1회 가능하며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제외 ◆ 지원규모 : 1년차 선정금액의 80% 이내 			

IV

창작공간활용

창작공간활용지원사업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제공하고 창작발표 및 지역민과의 교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내에 소재하며 도내 창작공간을 소유한 예술단체 또는 도내 창작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시설과 협약한 문화예술 단체 ※ 신청단체 대표자와 공간 운영주가 동일해야 함
<p>지원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공연, 시각 전 분야
<p>지원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아티스트피 지원(월 50만원이내, 3개월 이상) ◆ 참여 예술인과는 별도의 전담인력(기획, 연출 등) 참여 필수 ◆ 사업 전담인력(대표자 포함)의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인력은 명확한 역할에 따른 월별 활동·작업계획서 제출 필수 ◆ 공모를 통한 작가 선정 필수 및 기존 참여 예술인 중 1/2이상 교체 원칙 ◆ 작가는 최소 3개월 이상 참여 및 1개월 기준 15일 이상 공간 사용 ◆ 공간 임차료는 전체 사업비 20%내외로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 내역이 확인 가능한 계약서 첨부 필수 <div data-bbox="341 1232 1278 15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과 발표 회 : 연구 발표, 결과물 전시 등의 성과공유회 2. 역량강화교육 : 작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3. 주민연계활동 :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상 단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양 4. 아카이브활동 : 위 활동들에 대한 기록 작업 </div>
<p>지원항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예술가 창작활동비, 기획자 인건비, 도록·홍보물 제작비, 공간임차비 등 ※ 신축경비, 공과금, 다과비, 소모품비 등 편성 불가
<p>지원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 : 60백만원 이내 / 비거주형 :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30백만 원 이상 시 분할 교부



심의기준

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서류)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3차 현장평가	창작활동 및 공간 적절성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평가)
4차(인터뷰)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26

필수제출 자료

※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단체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 첨부자료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중 1개
 -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 ※ 행사명, 일시, 주최·주관,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
 - ※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등 공간 관련 증빙자료
 - ※ 단체 대표자와 공간 운영주가 동일해야 함
 - 공간관련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등
 - ※ 단체 대표자와 공간 운영주가 동일해야 함
 - 건물 외관, 작업실, 상주시설 등 사진 또는 도면
 - 세부 추진계획서
 - ※ 별첨 서식 작성 후 첨부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IV

청년예술가활동

청년예술가 활동사업은 우수한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예술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1년차(창작준비)** : 공모방식으로 선정
- ☞ **2년차(창작발표)** : 1년차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자격	◆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개인)																
지원영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8e6c9;">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0%;">공통</th> <th style="width: 20%;">단계별</th> <th style="width: 15%;">필수사항</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창작준비 (1년차)</td>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8f5e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활동비 지원 (재료비 또는 교육비 70% 이내 편성 등) •창작공간 지원 (작업실, 연습공간 등 임차비 30% 이내) 편성 가능) </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역량 강화 (기초) 지원 </td>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8f5e9;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td>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8f5e9;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창작발표 준비 재단·멘토 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창작발표 (2년차)</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발표 지원 (대관료, 홍보물, 사례비 등) •창작역량 강화 (심화) 지원 </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2년 연속지원 여부 결정 방법 : 1년차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2년차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p>					구분	공통	단계별	필수사항	비고	창작준비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활동비 지원 (재료비 또는 교육비 70% 이내 편성 등) •창작공간 지원 (작업실, 연습공간 등 임차비 30% 이내)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역량 강화 (기초) 지원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창작발표 준비 재단·멘토 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	창작발표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발표 지원 (대관료, 홍보물, 사례비 등) •창작역량 강화 (심화) 지원
구분	공통	단계별	필수사항	비고													
창작준비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활동비 지원 (재료비 또는 교육비 70% 이내 편성 등) •창작공간 지원 (작업실, 연습공간 등 임차비 30% 이내)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역량 강화 (기초) 지원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창작발표 준비 재단·멘토 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													
창작발표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발표 지원 (대관료, 홍보물, 사례비 등) •창작역량 강화 (심화) 지원 															
지원한도	◆ 창작준비(1년차) : 사업별 10백만원 이내 ※ 참고사항 : 창작발표(2년차)에 선정되는 경우 15백만원 이내로 지원																
사업추진 절차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width: 25%;">사업신청 '23.1.25.~2.3. (18:00)</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width: 25%;">> 지원심의</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width: 25%;">> 선정발표</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width: 25%;">> 선정단체워크숍, 전문가 컨설팅</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margin-top: 10px;">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margin-top: 10px;">> 전문가 현장평가 / 만족도조사 / 영상기록화</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margin-top: 10px;">> 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10px; margin-top: 10px;">> 정산보고</td> </tr> </table>					사업신청 '23.1.25.~2.3. (18:00)	> 지원심의	> 선정발표	> 선정단체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전문가 현장평가 / 만족도조사 / 영상기록화	> 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	> 정산보고				
사업신청 '23.1.25.~2.3. (18:00)	> 지원심의	> 선정발표	> 선정단체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전문가 현장평가 / 만족도조사 / 영상기록화	> 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	> 정산보고														

심의기준	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서류)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3차(인터뷰)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필수제출 자료 ※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개인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주민등록초본 (접수일 기준 전라남도 내 거주 확인) ※ 공고일 이후 발행 본만 인정	
	- 개인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세부 추진계획서 ※ 성과목표, 세부예산서, 2년차 성과발표 계획 필수 작성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IV

자율기획형(모두의 예술) 공모사업

자율기획형 공모사업은 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내용, 형식, 시기 등으로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창작활동 발굴과 지원영역 및 시기 확장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p>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3. 3. ~ 12. ◆ 지원내용: 현 전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참신한 문화예술창작활동 전반에 걸쳐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완성형 프로젝트 ◆ 지원시기: 연 3회('23. 1월 / 5월 / 7월) ※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남 도내· 외 문화예술단체 ◆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장르 ◆ 지원규모: 프로젝트별 40백만원 이내 ※ 사업예시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접근해 보는 다원 프로젝트 2. 기술·예술융합 등의 협업, 콜라보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3. 포럼, 콜로키움 등의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 등 </div>
<p>지원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기획, 연출 등) 참여 필수 ※ 사업 참여 인력은 명확한 역할에 따른 월별 활동·작업계획서 제출 필수 ◆ 필수프로그램: 아카이브 활동, 매월 워크숍 필수 참석
<p>사업추진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사업신청 '23.1.25.~2.3. (18:00)</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지원심의</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선정발표</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선정단체워크숍, 전문가 컨설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전문가 현장평가 / 만족도조사 / 영상기록화</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div> <div style="font-size: 20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margin: 5px; text-align: center;">정산보고</div> </div>

심의기준

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서류)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3차(인터뷰)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책임심의제 운영 : 지원사업 선정, 컨설팅, 평가까지 일원화하여 심의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개

- 세부 추진계획서(별도 양식 작성 후 제출)
※ 추진과제(이슈 선정 사유 등), 세부일정 및 계획, 성과목표 등

-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해당자에 한함)

※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원단체 스스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
자료

IV

공연장상주단체육성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시키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 **기간/장소** : '23. 3. ~ 12. / 도내 일원(공공 공연장)
- ◆ **지원대상** : 전남소재 공공 공연장과 협약한 공연예술단체
- ◆ **지원유형** : 2개 유형

지원영역

구분	유형1(육성)	유형2(집중)
사업명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집중지원
사업비	4천만 원 이내	9천만 원 이내
지원내용	창작 1, 퍼블릭 1	창작 1, 레퍼토리 1, 퍼블릭 1
지원자격	도내 공연예술단체로 1년 이상 활동 필수	도내 공연예술단체로 3년 이상 활동 필수
선정규모	6개 이내	6개 이내

※ 신규단체 진입 및 육성을 위한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유형 신설
 ※ 1개 공연장에 2개 (육성1, 집중1)단체까지 상주 가능

사업효과

구분	사업효과
공연예술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연습 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기획·홍보·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향유

◆ 공연장 상주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 상주단체 - 공연장 간 협약 필수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함

신청자격

※ 대상 공연장

-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및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
- 상주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을 필수로 함 (유료 대관 공연장 배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 체결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신청자격

공연장 역할(임무)	상주단체 역할(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마케팅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보조금 정산 총괄

◆ 상주단체 참여자 간 계약

-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 공연단체는 사업에 참여자(피고용인=출연진, 스태프 등)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급

지원한도

◆ 1개 상주단체 당 최소 4천만 원 ~ 최고 9천만 원 이내

구분	유형1(육성)	유형2(집중)
사업명	예비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집중지원
사업비	4천만 원 이내	9천만 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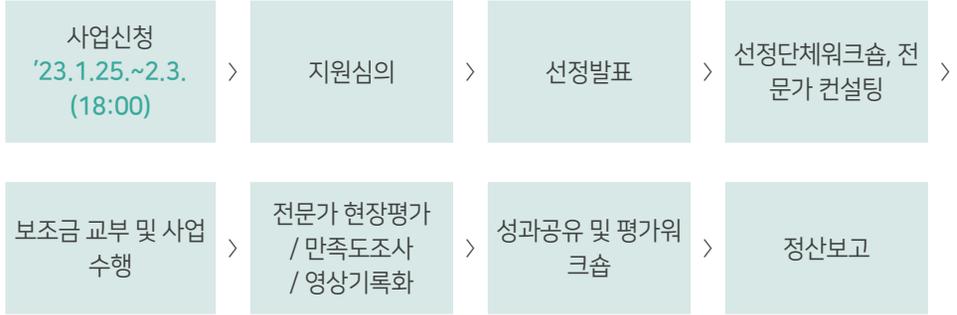
- 1개 공연장에 2개(육성1, 집중1)단체까지 상주 가능

수행 프로그램

◆ 상주 공연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구분	사업내용
필수 프로그램	<p>창작초연 작품 개발 (1작품 이상) ※ 육성, 집중 공통</p> <p>[연극·무용] : 창작초연(60분 이상) 1편 [음악] : 창작초연(극, 음악 등 대작 1편 또는 단편 곡 각 5분 이상 6곡-30분) ※ 지역의 인물·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초연 창작 작품에 한함</p>
	<p>레퍼토리공연 (1작품 이상) ※ 집중</p> <p>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하였던 우수 작품을 1작품 이상 공연 ※ 1회에 한해 타지역 상주단체를 포함하여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가능</p>
	<p>퍼블릭 프로그램 (1개 이상) ※ 육성, 집중 공통</p> <p>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p>
	<p>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1회 이상)</p> <p>상주단체 합동공연 또는 상주단체 페스티벌(기획사업, 통합 발표회) 참여로 교류·협력 확대 및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업 추진</p>
권장 프로그램	<p>조직역량 강화</p> <p>-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 조직운영(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육성-집중 유형 간 매칭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동일 공연장 혹은 유사 장르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p>

사업추진
절차



심의기준

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 필수자료 제출 등
2차(서류)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3차 현장평가	공연활동 및 공간 적절성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평가)
4차(인터뷰) 심의위원회	사업목적/기획의도 적절성, 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심의방법

- 공연단체와 공연장 관계자의 동반 참석을 필수로 하며,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심의진행(공연 단체와 공연장의 심사점수 반영비율 60:40)
- 공연장 예산 매칭의 경우 우대 (공연장 40점 중 15점)

*매칭비율 또는 매칭예산액	10%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2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점수반영	10점	15점

심의운영

- * 매칭비율은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 ※ 지자체 및 공연장과의 예산 매칭 협약서 및 공문 첨부 필수
- 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평가
-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 사항을 점검
- 사업 전담(기획, 행정 등)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 선정
-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
- ※ 심의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시 불이익 없음

◆ 심의방법

구 분	심의항목		
상주단체(60점)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25)	협력의지 및 노력도 (15)	창작역량 및 조직역량 (20점)
공연장(40점)	상주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10)	협약단체 지원계획(20)	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10)

단체 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2. 첨부자료

- 세부 사업계획서

※ 별첨 서식 작성 후, 첨부

※ 파일명 : 23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_세부 사업 계획서_단체명

- 활동 및 상주 계획 증빙자료

※ 별첨 서식 작성 후, 첨부

※ 파일명 : 23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_제출자료_단체명

①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중 1개

②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5개 이내

※ 공연명, 공연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공연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최근 활동 순으로 5건까지 인정

③ 공연단체-공공 공연장 간 협약서

※ 재단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공연장 등록증

⑤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

⑥ 공연단체 제공 사무실, 연습실 사진

- 지자체 및 공연장과의 예산 매칭 협약서 및 공문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
자료

※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참고.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1 예산 편성 기준

세목	항목	용도	비고
일 반 수용비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텝, 단기스텝, 단기 보조아르바이트, 작업보조자 등 출연료, 평론, 자문 등 대표자 사례비 :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편성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작품제작사업 :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창작공간활용사업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공연장상주단체 : 지급 불가 	사업자 등록업체 거래필수, 개인거래 불가
	발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록, 서적 발간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 세트 의상, 소품 등의 수선비 	
임차료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 세트, 전시장 조성 등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복 리 후생비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 및 소품(대소도구, 악기) 대여비 등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출연진 이동 버스, 용달비 등 차량 임차료 	
	복 리 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기 타 운영비	기 타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작품운송비 등) 	

항목	용도
개인·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사용 시 환수조치)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② 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료성 물품이 아닌 완제품 구입 불가
행사답사비 등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 인정(거래명세서 필요)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편성 불가 • 보조금 수령자(단체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교통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구분	사업명		연락처	비고	
전라남도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육성	시각예술	061-280-5825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연예술	061-280-5823	
			문학예술	061-280-5822	
	집중	공연작품제작	061-280-5823		
		창작공간활용	061-280-5824		
		청년활동가지원	061-280-5822		
		자율기획형 공모	061-280-582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061-280-5824			
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NCAS)	온라인 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지원신청 등)		1577-8751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